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 28 2019년 2월 2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18년 8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8년 9월 4일 상정, 보류)

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19년 2월 26일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어사대(단속반)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(1)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을 대폭 확충(60명

- → 200명)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31조)
- (2)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(위원 등) 및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1조 및 제33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8. 6. 7. ~ 6. 27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붙임

(3) 비용추계서: 별도 붙임

#### 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○ 본 개정안은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어사대(단속반)를 운영하고자 활용 가능한 민간전문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원의 숫자를 확대(60명→200명)하는 한편, '위원'이라는 명칭이합의기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'단원'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골자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	제31조(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
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	2
여 <u>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</u> 은 다	2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	<u> 지단원</u> 은
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로</u> 한다.	<u> </u>

○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대해 안전총괄본부 소속 으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씩(위원 중 호선)을 포함하여 총 60 명 이내의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[표] 안전관리자문단 분야별 위원 구성 현황

계	건축	토목	전기	기계	가스	소방	방재	건설 안전	통신	철 도
60	17	14	8	5	5	2	2	3	2	2

○ 이들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은 해빙기·우기 점검, 겨울철 안전 취약시설 점검 그리고 행락시설·기계식주차장·옥상대형광고 물·초고층건축물 등 각종 도시안전분야 점검 및 자문 등에 해 당함.([표] 참조)

[표] 최근 3년간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실적

	구 분	기 간	점검 대상	점 검 실 적(시정조치)
	설 날 대 비	1~2월(10일간)	전통시장, 여객자동차터미널 등	전기, 기계, 가스 등 138건
	해 빙 기	2~3월(20일간)	굴토공사장, 축대, 옹벽 등	토질, 건축 등 49건
	봄 행 락 철	4월중(13일간)	유원시설, 어린이놀이시설 등	건축, 기계, 소방 등 38건
	우 기 대 비	7월중(5일간)	공사중 하천시설, 산림사면 등	토목, 건설안전 등 93건
'16	광고물점검	3~4월(8일간)	옥상대형광고물(특정관리대상)	건축, 전기 등 112건
년	행락시설점검	5 월 중 ( 7 일 간 )	한강변 유선장, 전망카페 등	토목, 건축, 전기 등 244건
	지 하 보 도	8월중(10일간)	지하보도, 보도육교 등	토목, 구조, 전기 등 74건
	가스안전관리	8월중(10일간)	대형공사장 가스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	기계, 가스분야 246건
	지 하 상 가	11월중(7일간)	지하도상가 및 지가주차장 점검	기계, 전기, 소방 등 154건
	안전취약시설	12월중(10일간)	겨울철 안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	토목, 건축, 기계 등 225건
	해 빙 기	2~3월(7일간)	굴토공사장, 축대, 옹벽 등	토질, 건축, 전기 등 110건
	봄 행 락 철	3~4월(9일간)	공원시설, 어린이놀이시설 등	건축, 기계, 전기 등 228건
	다중이용시설	4~5월(7일간)	유원시설, 수상시설, 둘레길 등	토목, 건축, 전기 등 42건
	여 름 철	6~7월(5일간)	수영장, 캠핑장, 야외물놀이장 등	건축,기계,전기등 29건
'17 년	가 을 철 추 석 대 비	9 월 중 ( 9 일 간 )	전통시장, 터미널, 지하철역 등	건축,전기,소방,가스등 118건
	공원시설 점검	3 월 중 ( 9 일 간 )	생활권공원시설 안전점검 등	전기, 기계, 가스, 전기 토목 등 228건
	옥상광고물	5~6월(11일간)	옥상대형광고물(특정관리대상)	건축구조, 전기 등 112건
	종교시설첨탑	8~9월(10일간)	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	건축구조, 전기 등 132건
	기계식주차장	10~12월(15일간)	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	건축구조, 전기, 기계 등 223건
	지진안전대비	'17.11~'18.2월 (93일간)	민간건축물(피로티, 조적조)	현장안전관리 등 48건
	건설공사안전	1~2월(15일간)	타워크레인 점검	현장안전관리, 기계분야 등 72건
	설 명 절 안 전 점 검	1~2월(8일간)	다중이용시설(전통시장, 여객터미널 등)	소방, 가스, 전기분야 등 242건
'18	화재취약시설	2~3월(3일간)	소규모 숙박시설(모텔등)점검	소방, 가스, 전기분야 등 76건
년	건 설 공 사 안 전 점 검	4~5월(15일간)	이동식크레인 점검	현장안전관리 등132건
	초고층건축물	4~5월(3일간)	초고층 및 지하연게 복합건축물 점검	재난예방 계획수립 등 229건
	LP가스 점검	5~6월(12일간)	LP가스 사용취약시설 점검	가스분야 66건
	캠핑장점검	5~6월(12일간)	여름 휴가철 캠핑장 시설안전점검	소방, 전기분야 등 61건

- 서울시는 금년 1월 '안전문화 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(행정2부 시장 방침 제11호, 2018. 1.29)'의 일환으로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에 대해 그동안의 권고 위 주 소극적 점검에서 단속 위주의 적극적 점검으로 변화를 모색 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를 위해 서울시는 "안전어사대"라는 명칭의 단속반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이를 위해 내부공무원(시설안전과 직원)인 '어사'와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분야 경험자인 '어사대원',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의 '전문가'들로 안전어사대를 운영할 방침임.

#### ※ 서울시 안전어사대 구성(안)

- **어** 사 : 특사경으로 지정된 내부 공무원(시설안전과 직원)으로 구성
  - 역 할 :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어사대원 단속 지휘 ·조정
- 어사대원: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(미급)으로 구성 ※60명 채용('18년: 20명 '19년: 40명) ※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 분야 유경험자(토목, 건축, 방재 등 퇴직공무원 포함)
  - 역할 :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에 대해 상시순찰을 통한 안전단속업무 수행
- **전문가** : 민간현장 전문가 200명 POOL 구성('18년: 100명, '19년: 100명)
  - ※ 건설안전, 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, 가스, 방재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
  - 역 할 :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각 전문분야별 자문
- 이처럼 안전어사대가 구성되면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(도심, 동북, 동남, 서북, 서남)으로 나누어 1일 5개팀(팀별 4~6명)이 토목, 건축, 방재 등 관련분야를 단속하게 됨.
- 이를 위해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수준의 인력풀(pool)로 확대·구성하고 점검 대상에 따라 해 당 관련분야 전문가 투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

취지임.

- 이는 현행 조례가 정한 60명으로는 관련 전문가의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명이내의 인력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법」제75조제2항¹)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제약은 없으며.
- 또한, 서울시가 안전어사대를 운영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관련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인력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,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.
- 다만, 현행 조례가 안전관리자문단 규모를 60명 이내로 제한 하고 있고 이를 200명으로 확대하는 본 조례개정이 이루어지 지도 않은 상태에서.
- 서울시가 '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(시설안전과-4254, '18.3.21.)'이라는 방침에 의거 민간현장 전문가 즉, 안전관리 자문단 인력풀²) 200명('18년:100명, '19년:100명)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2018.6.20.일 이미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는바, 이처럼 관련조례 개정 없이 향후 개정을 전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지

전문가 : <u>민간현장 전문가 200명 POOL 구성('18년 : 100명, '19년 : 100명)</u>

<sup>1)</sup> 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 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sup>2) [</sup>안전어사대 구성인력]

<sup>※</sup> 건설안전, 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, 가스, 방재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

<sup>-</sup> 역 할 :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각 전문분야별 자문

양되어야 할 것임.

- 한편, 본 개정안은 '자문단'을 합의체인 '위원회'로 오인할 소지 가 있다는 판단 하에 현행 '위원'을 '자문단원'으로 수정하고 있 는데, 이는 자문단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,
- 다만, 안 제31조제4항 및 제33조에도 '위원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이 역시 '자문단원'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([표]참조)

[표]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	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
①~③ (생략)	①~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단장 및 부단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	④ 단장 및 부단장은 <u>자문단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
제33조 <u>(자문단 위원의 임기)</u> 자문단원의 임기는	제33조 <u>(자문단원의 임기)</u> (개정안과 같음)
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	
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	

## 5. 질의 및 답변 요지:

- 질의) 안 제31조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하도록 하고 있는데,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 전문가를 확보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?(정진술 위원)
- 답변) 현재로서는 여성 전문가를 현장 점검 및 단속 등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.

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여성 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.(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
- 질의) 안전관리자문단은 항시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 활용되는 것인지?(홍성룡 위원)
- 답변) 모든 안전점검 또는 진단에 안전관리자문단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문단 중 선별된 인력이 동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임.(김학진 안전총괄실장)
- 6. 토론요지 : 없 음
- 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- 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9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- 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- 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8 제 안 일 자 : 2019년 2월 26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○ 본 개정안은 '자문단'을 합의체인 '위원회'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'위원'을 '자문단원'으로 수정하고 있는데, 안 제31조제4항 및 제 33조 제목에서도 '위원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역시 '자 문단원'으로 수정하고.

○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별도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 구분 없이 200명 이내로 함(안 제31조제2호).
- "위원"을 "자문단원"으로 수정함(안 제31조제4호).
- 안 제33조 제목을 "자문단원의 임기"로 함(안 제33조).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"를 "이내로 구성하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위원"을 "자문 단원"으로 한다.

안 제33조의 제목 "(자문단 위원의 임기)"를 "(자문단원의 임기)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	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	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
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	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	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
성) ① (생 략)	성) ① (현행과 같음)	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	②	②
단장 각 1명을 포함하	<u>200</u>	
여 60명 이내의 위원으	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	이내로 구성하되,
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	<u>하여 구성하되, 자문단</u>	<b></b>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<u>원</u>	
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		
에서 시장이 위촉하는		
<u>자로</u> 한다.	<u>사람으로</u>	
1. 건축·토목·전기·가	1	1.~3. (개정안과 같음)
스·기계 및 소방 등		
관련분야 대학교수와		
기술사, 건축사 또는		
이에 준하는 <u>자</u> (이하	<u>사</u>	
"전문가"라 한다)	라 <u>라</u>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
3. 안전관리에 관한 학	3	
식과 경험이 풍부한		
<u>자</u>	<u>사람</u>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	④ 단장 및 부단장은 <b>위</b>	④자
원 중에서 호선한다.	원 중에서 호선한다.	문단원
제33조(자문단 위원의	제33조(자문단 위원의	제33조(자문단원의 임
임기) <u>단장、부단장 및</u>	<b>임기</b> ) <u>자문단원</u>	기) (개정안과 같음)
<u>위원</u> 의 임기는 2년으로		

		v
하되	연임할 수 있다.	
다만	, 다음 각 호의 어	
느 t	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	는 임기 <u>만료전이</u>	만료 전이
<u>라도</u>	<u>시장은 위원</u> 을 해	라도 시장이 자문단원-
촉할	수 있으며, 보궐위	<u>있다</u> .
<u>원의</u>	임기는 전임자의	
<u>남은</u>	임기로 한다.	
1 :	프이스시 키키브카	1
1. 7	품위손상, 장기불참	1
등	· <u>위원</u> 의 직무를 수	<u> 자문단원</u>
행	하는 데 부적합하	
다	고 인정되는 경우	
2. (	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"을 "20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자문단원"으로, "자로"를 "사람으로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"자"를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위원"을 "자문단원"으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"(자문단 위원의 임기)"를 "(자문단원의 임기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단장、부단장 및 위원"을 "자문단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"을 "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"으로, "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"를 "있다.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위원"을 "자문단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	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
의 설치ㆍ구성) ① (생 략)	의 설치、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	2
명을 포함하여 <u>60명 이내의 위원</u>	<u>200명 이내로 구성</u>
<u>으로 구성하되, 위원</u> 은 다음 각 호	<u>하되, 자문단원</u>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	
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로</u>	<u>사람으로</u>
한다.	
1. 건축、토목、전기、가스、기	1
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	
수와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	
준하는 <u>자</u> (이하 "전문가"라 한	<u>사람</u>
다)	_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	3
이 풍부한 <u>자</u>	<u>사람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단장 및 부단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	④ <u>자문단원</u>
호선한다.	
제33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단장	제33조(자문단원의 임기) 자문단원
<u>· 부단장 및 위원</u> 의 임기는 2년으	
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임기 <u>만료전이라도 시장</u>	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
<u>은 위원</u> 을 해촉할 수 <u>있으며, 보궐</u>	<u>원 있다.</u>

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</u> <u>기로 한다.</u>

- 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<u>위원</u>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
- 2. (생 략)

1.			<u> 자문단원</u>
_			
2.	(현행과	같음)	